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고길동	750101-*****	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초상환 예정일	상환 기간	주택 취득일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(사업사인모)	(영급명)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	
U 새마을금고	해당없음 (주택자금대춬(주	2019-08-31 2039-08-31	20년	2019-08-30	2019-08-31	1,770,512	1,770,512
(209-06-29912)	(주택자금대출(주 택구입자금대출))	25,000,000	0	25,000,000	0	_,,,,,,,,,	
JM 은행(주) (104-86-39742)	해당없음 (주택자금대출)	2015-05-15 2035-05-15	20년	2012-10-31	2012-10-16	7,167,652	5,000,000
(104-00-39/42)	(구택시금내물)	0	0	0	0	. ,	. ,

- 1. 공제 대상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일련번호: 20201222-01330044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고길동	750101-*****	

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	사업자번호	대출계좌번호	대출일	상환액 계
(주)OU은행	201-81-02819	132040****	2010-05-31	1,515,720
FGF 은행	201-81-68693	648009****	2016-07-28	1,984,847
FGF 은행	201-81-68693	648009****	2016-08-26	3,223,401
합 계				6,723,968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
- ※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(세대주, 세대원) 명의여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%

-2-

※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01222-01330044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월세액]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임차인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고길동	750101-*****	

■ 월세액 지급내역 (단위:원)

임대인 성명(상호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	임대차 계약기간	계약서상 주소지	계약면적 (m²)	지급액 계
주인장 870330-*****	2019-05-01~ 2020-04-30	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2016동 8104호	57	8,000,000
주인장 870330-*****	2020-05-01~ 2021-04-30	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2016동 8104호	57	16,000,000
합 계				24,000,000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)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 ※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
- 3. 공제율 : 10%. 단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)는 12%
- 4. '월세액 세액공제'와 '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'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'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' 대상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.

일련번호: 20201222-01330044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